

부산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5525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55255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7. 12 선고 2022가합10156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S

피고, 항소인 AK

변론종결 2024. 5. 23.

판결선고 2024. 7. 18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7. 12. 선고 2022가합101563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AG 유한회사, 주식회사 AH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82, 83, 84, 85, 8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1부분 15.1㎡를 원상복구 하여 인도하고, 2022. 1. 1.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240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청구취지에 금전지급의무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,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가.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82, 83, 84, 85, 8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1부분 15.1㎡의 건물부분(이하 ‘이 사건 건물부분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로서, AG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월차임 1,240,8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.

나. 원고와 AG 유한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21. 12. 31. 종료하였음에도,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차인으로서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상복구 하여 인도하고, 2022. 1. 1.부터 위 건물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,240,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을마 제1호증, 을마 제2호증의 1 내지 3,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, 갑 제14호증의 9,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

부족하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상민, 판사 박진웅, 판사 최희영

별지